

초기불전연구원 공부모임 회칙(2016. 10. 29. 개정)

초기불전연구원 공부모임 회칙

[제정 공포 : 불기 2554년(서기 2010년) 12년 01일]

[1차 개정 :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03월 26일]

[2차 개정 :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12월 11일]

[3차 개정 :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10월 27일]

[4차 개정 : 불기 2558년(서기 2014년) 10월 18일]

[5차 개정 : 불기 2560년(서기 2016년) 10월 29일]

[6차 개정 : 불기 2568년(서기 2024년) 10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초기불전연구원 공부모임'(이하 공부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공부모임은 초기불전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근간으로 하여 초기불교의 이해·수행·홍포에 힘쓰므로써 부처님 법이 바르게 유통·신행·전승되어 모든 중생이 궁극의 행복인 해탈·열반을 얻게 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일을 행한다.

1. 초기불교 교학 공부
2. 초기불전 및 주석서에 따른 수행
3. 초기불교의 전파(전법·포교)
4. 초기불교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신행 형태 및 승가 유지 방식을 포함)
5. 초기불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제3조 (활동 및 역할)

공부모임 활동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임시 법회 개최
2. 전법 포교 활동, 수행모임 운영, 수련 법회, 성지 순례 등의 신행 활동
3. 공부모임 운영 및 학술·연구 활동
4. 봉사 및 복지 활동
5.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홍보 활동
6. 초기불전연구원 후원 및 도량 마련
7. 기타 초기불교 홍포와 초기불전연구원의 발전에 필요한 행위

제4조 (금지 행위)

공부모임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제5조 (장소)

공부모임의 본부와 사무실은 필요한 경우 정하여 적당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6조 (적용 범위)

- ① 공부모임은 각 지역모임과 연합회로 구성되며, 본 회칙은 각 지역모임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회칙에 특별히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연합회 활동에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② 지역모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원, 또는 설립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모임에 속한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합회 소속으로 하여 연합회에서 관리한다. 다만 연합회 임원회의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공부모임의 회원은 정보리회원, 준보리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보리회원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회하여 회원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일반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하고 일반 회비 연체액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를 통과한 사람. <개정 2555(2011). 03. 26.>
2. 준보리회원 : 정보리회원 이외의 회원.

제8조 (회원의 자격 취득)

- ① 공부모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준보리회원이 된다.
- ② 정보리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정보리회원이 된다. 다만 공부모임 회원명부에 정보리회원으로 기재되어야 정보리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 ③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준회원은 공부모임 회원이 될 수 없다. <본 항 신설 2558(2014). 10. 18.>

제9조 (회원의 권리)

- ① 정보리회원은 공부모임의 운영 및 활동 시 참여권, 발언권, 제안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준보리회원은 일반적인 활동 참여권, 제안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 ① 공부모임의 규칙을 준수한다.
- ② 회비를 납부한다.
- ③ 공부모임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제11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복권)

- ①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보리회원 또는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부모임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공부모임의 목적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사람은 제명 결정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일반 회비 미납액이 3개월 이상인 회원은 자동으로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준회원은 공부모임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본 호 신설 2558(2014). 10. 18.>
 - ②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명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정보리회원은 언제든지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555(2011). 03. 26.>
 - ⑤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정보리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회비 3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555(2011). 03. 26.>

제12조 (상벌)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경고, 제명 등)를 행한다. <개정 2555(2011). 03. 26.>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 (총재)

- ① 초기불전연구원 원장은 당연직으로 공부모임의 총재가 된다.
- ② 총재는 공부모임을 지도하고 연합회 회장과 지역모임 회장의 임면을 인가한다.

제14조 (지도법사)

- ① 초기불전연구원 스님은 공부모임의 당연직 지도법사가 된다.
- ② 지도법사는 각종 공부모임 활동을 지도한다.

제15조 (부서 및 임원)

공부모임은 연합회와 지역모임으로 구분하여 부서 및 임원을 둔다.

제16조 (지역모임 부서 및 임원)

- ① 지역모임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서 및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약간 명
 3. 총무 : 1명
 4. 감사 : 1~3명 <개정 2555(2011). 03. 26.>
 5. 고문 : 약간 명
- ② 지역모임 회장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임원으로 구성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획홍보부 : 부장 1명
 2. 총무부 : 부장 1명(총무가 겸임)
 3. 신행교육부 : 부장 1명
 4. 봉사부 : 부장 1명
- ③ 지역모임 사무국에는 부서별로 약간 명의 차장을 둘 수 있다.

- ④ 필요시 임원회의를 거쳐 부서 및 임원직을 증설·폐지·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장, 총무, 감사는 필수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임원은 원칙적으로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총무는 총무부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며 부회장은 사무국의 임원직 중 하나를 겸임할 수 있다.
- ⑥ 출가수행자인 스님은 원칙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 (연합회 부서 및 임원)

- ① 연합회 임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모임 임원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연합회에는 원칙적으로 지역모임과 동일한 종류의 임원을 두며, 연합회 회장이 속한 지역모임의 임원이 겸직하여 수행하되,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와 회계 등은 구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직무)

- ① 연합회 회장은 공부모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모임 회장은 지역모임을 대표하고 지역모임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연합회 부회장은 연합회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역모임 부회장은 지역모임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연합회 총무는 각 지역모임과의 연락을 행하고 총무부장을 겸하며, 지역모임 총무는 연합회 및 타 지역모임과의 연락을 행하고 총무부장을 겸한다.
- ④ 연합회 감사는 공부모임 활동 전반에 걸쳐 정기·부정기 감사를 시행하며, 지역모임 감사는 소속 지역모임에 대하여 정기·부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 ⑤ 고문은 공부모임의 자문에 응하고 조언한다.
- ⑥ 연합회 및 지역모임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원회의를 거쳐 업무를 신설·변경·폐지할 수 있다.

1. 기획홍보부

- (1) 공부모임 제반 활동에 대한 기획 및 조정
- (2) 공부모임의 연간 운영 계획과 예산안 수립 및 실적 분석
- (3) 대외 협력 및 섭외
- (4) 공부모임 홈페이지 및 지대방 운영
- (5) 법회보, 공부모임 회보 기타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 (6) 초기불전연구원 지원 활동
- (7) 대내외 홍보 활동

2. 총무부

- (1) 공부모임 회원 명단 관리
- (2) 입회원서 접수와 관리 등 신입회원 관련 업무
- (3) 회비 징수·관리·지출 등 회계 업무
- (4) 공부모임 각종 회의록 작성
- (5) 회원 간 연락 업무

3. 신행교육부

- (1) 교육·수행 프로그램 입안 및 교육
- (2) 전법 포교 활동, 정기·임시 법회, 수련법회, 성지순례 등 신행 활동 업무

(3) 학술·연구 활동 업무

4. 봉사부

(1) 봉사 및 복지 활동

(2) 경조사 관련 업무 기타 회원 간 친목도모 업무

제19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① 연합회 회장은 지역모임 회장 가운데 한 명을 연합회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총재의 인가를 받는다. <개정 2556(2012). 10. 27.>

② 지역모임 회장은 지역모임 총회에서 지역모임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며 총재의 인가를 받는다. <개정 2555(2011). 03. 26.> <개정 2556(2012). 10. 27.>

③ 지역모임 임원은 지역모임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555(2012). 10. 27.>

④ <신설 2555(2011). 03. 26.> <삭제 2556(2012). 10. 27.>

⑤ 연합회의 기타 임원은 연합회 회장이 속한 지역모임의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연합회는 연합회 총회, 지역모임은 지역모임 총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556(2012). 10. 27.> <개정 2558(2014). 10. 18.>

② 임기 중 임원이 변경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새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③ <삭제 2556(2012). 10. 27.>

④ <삭제 2556(2012). 10. 27.>

⑤ 임원이 회비의 연체 등으로 정보리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원직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의의 결정으로 임원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신설 2556(2012). 10. 27.>

제21조 (임원의 대행)

① 지역모임 회장이 병환·사고 기타 사유로 임무를 당분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임원이 대행한다.

② 임원이 사망·사임·사고 기타 사유로 결위 또는 자격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22조 (임원의 임무)

공부모임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 공부모임을 대표·총괄하며 총회·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임원의 임명을 총재에게 보고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총괄적인 일을 담당하며 회장 결위 시 대행한다.

3. 총무

(1)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회비 입출금 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2) 회원 명부, 출석부, 총회 및 임원회의 회의록 등 각종 문서를 작성·관리한다.

4. 사무국

각종 행사 진행, 안내, 교육, 회원 연락 기타 실무를 담당한다.

제23조 (임원의 권한)

각 임원은 고유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독립하여 보유·행사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4조 (운영위원회 구성)

- ① 공부모임은 각 지역모임의 연합체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각 지역모임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본 회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총재, 지도법사, 연합회의 회장·부회장(1명)·총무·감사(1명), 각 지역모임의 회장·부회장(1명)·총무·감사(1명)로 구성한다. 다만 연합회 총회에서 위촉된 약간 명의 기능직 운영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 회의 및 업무)

- ① 연합회 회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고, 지역모임 회장 가운데 한 사람이 부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지역모임 간 균형과 화합을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연합회 회장의 추천
 2. 지역모임 회칙의 승인
 3. 지역모임의 창설·변경·폐지에 대한 승인
 4. 공부모임의 운영 방향 제시 기타 운영에 대한 지도와 조언

제26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 ① 정기회의는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합회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556(2012). 10. 27.>
- ② 임시회의는 원칙적으로 연합회 회장이 소집하며, 감사의 특별 보고 건이 있을 시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및 결의)

-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메일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답신을 보낸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계산한다. <신설 2556(2012). 10. 27.>

제5장 회 의

제28조 (회의의 종류 기타)

- ① 공부모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전체 임원회의가 있다.
- ② 모든 회의에서 임원직을 겸직하는 임원의 경우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이나 임원은 의결권을 일정한 양식과 절차를 갖춰 타 회원이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의 성립)

① 각 지역모임은 아래와 같이 총회를 시행하며,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연합회 총회에도 준용한다.

② 총회는 당해 지역모임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모임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14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장이 공고하고 통지한다.
<개정 2556(2012). 10. 27.>

제30조 (정기 총회)

① 연합회 총회와 지역모임 총회는 매년 1회 각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556(2012). 10. 27.>

② 지역모임 총회는 연합회 총회보다 먼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556(2012). 10. 27.>

제31조 (임시 총회)

① 재적 정보리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 정보리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로서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정보리회원 또는 임원들이 대표자를 세워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3조 (총회 의결 사항)

① 아래 사항은 총회의 전속 의결 사항으로 한다.

(1) 예산 및 결산 승인

(2) 회장 선출 및 탄핵

②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총회는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 (임원회의)

모든 임원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35조 (정기 임원회의)

반기별로 매1회 정기 임원회의를 한다. <개정 2555(2011). 12. 11.>

제36조 (임시 임원회의)

①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회장이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임원회의를 요구한 임원들이 대표자를 세워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 (임원회의의 의결 사항)

임원회의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업무 계획 및 보고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8조 (임원회의의 의결)

- ① 원칙적으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이메일을 통해 회의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답신을 보낸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계산한다. <신설 2556(2012). 10. 27.>

제39조 (전체 임원회의 기타)

- ① 공부모임은 연합회 임원과 지역모임의 임원이 전체 참여하는 전체 임원회의를 가질 수 있다.
- ② 공부모임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회의를 합쳐 합동회의를 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와 전체 임원회의의 합동회의에서 공부모임 총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④ 이메일을 통해 합동회의를 할 수 있으며 이메일로 의사를 표시했거나 답신을 보낸 임원이나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계산한다. <신설 2556(2012). 10. 27.>

제6장 감사

제40조 (임무)

감사는 공부모임의 제반 업무와 재정 업무를 독립하여 감사한다.

제41조 (시기)

- ① 감사는 연 1회 정기감사를 정기총회 전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한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비정기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 (감사 통보)

- ① 감사는 각 임원에게 감사 일자 및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556(2012). 10. 27.>
- ②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임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7일 이내) 응하여야 하며 감사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7장 재무 회계

제43조 (재정의 용도와 재무 보고)

- ① 재정은 공부모임의 목적을 위한 일에만 사용한다.
- ② 재무 보고는 반기별로 임원회의 시 행한다. <개정 2556(2012). 10. 27.>
- ③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44조 (수입)

- ① 공부모임의 재정 수입은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된다.
 - 1. 회비
 - (1) 일반 회비
 - (2) 특별 회비
 - 2. 찬조금
 - 3. 기타 수입
- ② 공부모임의 일반 회비는 월 1만원(일시 선납의 경우 연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대학생은 월 3,000원(일시 선납의 경우 연 3만원)으로 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은 회비를 면제한다.
- ③ 특별 회비는 각 지역모임 임원회의에서 정하고 연합회의 특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공부모임의 모든 수입은 지부별(지역모임별, 항목별)로 관리하되 회비 납부 금액의 20%는 연합회 회비 관리 통장으로 입금한다. 입금 방법은 1년간 회비 수입 금액을 총회 1개월 전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합회 회비 관리 통장에 이체한다. <개정 2560(2016). 10. 29.>

제45조 (지출)

- ① 공부모임의 지출은 아래 항목에 따른다.
 - 1. 각 지부별 연등비
 - 2. 스승의 날 행사비
 - 3. 총회 경비
 - 4. 운문팀 지원비
 - 5. 공부모임 장소 대여비 지원
 - 6. 초기불전연구원 행사 지원비
 - 7. 지역모임 창립 지원비
 - 8. 기타 연합회 회장 사전 승인 후 지출한 비용<개정 2560(2016). 10. 29.>
- ② 공부모임은 임원회의의 결의로 경조비에 대한 원칙을 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
- ③ 모든 지출은 연합회 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경미한 지출의 경우 등에는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기타 재정의 관리 및 지출에 관하여는 따로 세부 규칙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의 1 (조의금)

- ① 공부모임은 조의금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조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조의금 지출 당시 총 5개월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보리회원에 한한다.

2. 조의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부모의 사망, 배우자 부모의 사망, 자녀의 사망으로 한다.

3. 조의금은 금 10만 원으로 하고 공부모임 이름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역 모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 내지 일부 금액을 화환 등으로 대체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조의금에 관한 사항은 지역모임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556(2012). 10. 27.>

<본조 개정 2558(2014). 10. 18.>

제46조 (회계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예산 및 운영)

연합회 회장과 지역모임 회장은 각각 당해 연도 결산안과 차기 연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 협의하고 각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기타 규약

제48조 (회칙 개정)

① 공부모임의 회칙 개정은 각 지역모임 회장이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제2조(목적)의 개정은 연합회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할 수 있으며 지역모임 회칙에서 달리 정할 수 없다. <개정 2556(2012). 10. 27.>

② 지역모임이 자체 회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지역모임 회장이나 또는 임원회의 임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임원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시행 세칙)

① 이 회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회칙의 범위 안에서 임원회의를 거쳐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기타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초기불전연구원과 협의한다.

제50조 (준용 규정)

이 규칙이나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정하고 임원회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부모임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불기 2554년(서기 2010년) 12월 01일]

제1조 (시행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54년(서기 2010년) 12월 1일 제정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발효한다.

제2조 (효력 범위)

회칙이 없는 동안에 있었던 공부모임의 활동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이 회칙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미 행해진 일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연합회 임원)

초대 임원의 선출은 창립총회에 의하고 첫 연합회 임원은 서울경기 지역모임 임원이 겸임하며 이후 지역모임들이 순차로 연합회 임원을 겸임토록 한다.

제4조 (초대 임원의 임기)

초대 임원의 임기는 불기 2554년(서기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시되며 2556년(서기 201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5조 (일반 회비 납부 의무 개시일)

회원의 일반 회비 납부 의무는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부칙 -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03월 26일]

제1조 (명칭 변경)

본 회칙의 정회원은 보리회원으로, 준회원은 준보리회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제2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03월 26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다만 회원(보리회원 및 준보리회원)의 지위와 관련한 개정 내용은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부칙 -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12월 11일]

제1조 (명칭 변경)

본 회의 회원은 보리회원으로 통칭하고, 정회원은 정보리회원, 준회원은 준보리회원으로 칭하며, 정회원·준회원으로 약칭할 수 있다.

제2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12월 11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 부칙 -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10월 27일]

제1조 (연합회 임원)

연합회 임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서울경기 지역모임 임원이 겸임하며 이후 지역모임들이

순차로 연합회 임원을 겸임토록 한다.

제2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56년(서기 2012년) 10월 27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 부칙 -

[불기 2558년(서기 2014년) 10월 18일]

제1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58년(서기 2014년) 10월 18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 부칙 -

[불기 2560년(서기 2016년) 10월 29일]

제1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60년(서기 2016년) 10월 29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 부칙 -

[불기 2568년(서기 2024년) 10월 19일]

제1조 (명칭 변경)

본 회의 명칭은 초기불전연구원공부모임으로 통칭하고, 부산경남 모임은 보리원 모임으로 통칭한다.

제2조 (개정 및 발효 시기)

본 회칙은 불기 2568년(서기 2024년) 10월 19일에 개정하며 개정 시부터 발효한다.

- 불임 (지역모임 현황)

- * 강원 모임
- * 광주호남 모임
- * 대구경북 모임
- * 부산경남 모임 : 설립 완료(승인).
- * 서울경기 모임 : 설립 완료(승인).
- * 실상사 모임 : 설립 완료(승인). (해체)
- * 제주도 모임 : 설립 완료(승인).
- * 충청 모임

- 별첨 (초기불전연구원 공부모임 시행 세칙)

< 초기불전연구원 공부모임 시행 세칙 >

[제정 :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03월 26일]

제1조 (회비의 면제)

신입 회원의 경우에 입회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 다만 이 조항은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2조 (회비의 환불)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회비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환불 요청은 탈퇴 또는 제명 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한 일반 회비 중 탈퇴 또는 제명이 행해진 달까지의 일반 회비(월 1만원으로 계산함)는 공제하고 환불하며, 이는 정보리회원인 회원이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 시기)

본 시행 세칙은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03월 26일 제정하며 제정 시부터 발효한다.

제2조 (효력 범위)

본 시행 세칙이 없는 동안에 있었던 공부모임의 활동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이 시행 세칙이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이미 행해진 일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